KAIST 수학문제연구회 회칙

[시행 2024.11.14.] [2024.11.11. 일부개정]

▶ 조항 바로가기

- 제1장 총강
 - ㅇ 제1조(명칭)
 - 이 제2조(정의 및 목적)
 - ㅇ 제3조(소속)
- 제2장 회원
 - ㅇ 제4조(회원)
 - ㅇ 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- 제6조(동아리 활동 비용)
- 제3장 임원과 신입대표회원
 - ㅇ 제7조(임원)
 - ㅇ 제8조(대의원)
 - ㅇ 제9조(회장)
 - ㅇ 제10조(부회장)
 - ㅇ 제11조(부서장)
 - ㅇ 제12조(신입대표회원)
- 제4장 부서
 - ㅇ 제13조(부서 배정)
 - ㅇ 제14조(총무부)
 - o 제15조(학술부)
 - o 제16조(Math Letter 편집부)
 - 제17조(홍보부)
 - 제18조(경시부)
 - ㅇ 제19조(임시부서)
- 제5장 활동
 - 제20조(활동)
 - 제21조(정기 모임)
 - 제22조(과목톡방)
 - 제23조(스터디)
 - 이 제24조(축제 부스 활동)
 - ㅇ 제25조(동아리 레이스)
 - 이 제26조(학술 교류전)
 - o 제27조(Math Letter)
 - ㅇ 제28조(친목활동)
- 제6장 운영
 - 제29조(재정)
 - 제30조(수고비)
 - ㅇ 제31조(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)
 - ㅇ 제32조(임원의 임명)
 - ㅇ 제33조(신입대표회원의 선거)
 - 제34조(총회)
 - ㅇ 제35조(임원의 탄핵과 보궐 선출)

- 제36조(제명)
- 제37조(회칙 개정)

전문

1988년에 제정된 수학문제연구회 회칙을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제1장 총강

제1조(명칭)

- ① 본회는 KAIST 수학문제연구회(이하 본회)라고 칭한다.
- ②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Group이라 표기한다.
- ③ 본회 명칭의 약어로는 수문연, M^2 을 사용한다. M^2 은 Membership & Mathematics를 뜻한다.

제2조(정의 및 목적)

본회는 수학 문제의 교류와 여러 학술활동을 통해 개인의 사고력과 정서를 함양하고 수학적 소질을 계발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더 나아가 수학을 함께 즐기는 문화의 형성과 수학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속)

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(이하 동연) 소속으로 동연의 회칙을 준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본회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 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장 회원

제4조(회원)

- ① 본회의 회원은 현역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뉜다.
- ② 현역회원은 해당 학기 동아리 활동 명부에 이름을 올려, 동아리 활동 비용을 납부한 회원을 일컫는다.
- ③ 신입회원은 정규학기 기준 2학기 미만으로 활동한 자를 의미한다.
- ④ 명예회원은 해당 학기 동아리 활동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, 총 6학기 이상을 본회의 현역회원으로 활동한 자이다. 다만 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6학기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명예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⑤ 휴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아리 활동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, 총 1학기 이상을 본회의 현역회원으로 활동한 자이다. 단, 본회에서 제명된 자 및 명예회원은 제외한다.
- ⑥ 휴동회원이 활동하고자 하는 학기의 회비 납부 기간에 회비를 납부한다면 해당 학기 현역회원으로 인정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본회의 현역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③ 본회의 현역회원은 의무활동 외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아니한다.

- ④ 본회의 현역회원은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가진다.
- ⑤ 본회의 현역회원은 동아리 내 의무활동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
제6조(동아리 활동 비용)

- ① 동아리 활동 비용은 학기당 1회 납부한다.
- ② 2학기 미만 활동한 현역회원의 경우 ₩20,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다.
- ③ 2학기 이상 6학기 미만 활동한 현역회원의 경우 ₩40,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다.
- ④ 6학기 이상 활동한 현역회원의 경우 ₩20,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다.
- ⑤ 명예회원은 학기 중 언제라도 회장의 승인을 거쳐 ₩20,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하여 현역회원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- ⑥ 동아리 활동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현역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⑦ 동아리 활동 비용은 본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원진들의 재량으로 임시적으로 낮출 수 있다.
- ⑧ 동아리 활동 비용은 본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현역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.

제3장 임원과 신입대표회원

제7조(임원)

-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부서장에 해당하는 자를 일컫는다.
- ② 본회의 모든 임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.
- ③ 본회의 모든 임원은 같은 직책으로의 연임이 불가능하다.
- ④ 회장과 부회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.
- ⑤ 회장, 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⑥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시점부터 후임 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. 단,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차기 임원의 임기에서 첫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는 권한을 유지한다.
- ① 선출된 차기 임원은 임기에서 첫 정규학기의 개강 이전에 현 임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임원으로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

제8조(대의원)

- ① 대의원은 동연에서 회장의 부재 시에 회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는 회원이다.
- ② 대의원은 제1호와 제2호의 각 1인으로 총 2인을 임명한다. 단,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연 회칙에서 정하는 대의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호에서 2인을 임명한다.
 - 1. 전임 회장
 - 2. 현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

제9조(회장)

-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정기 모임을 준비하고 정기 모임을 진행한다.
- ② 회장은 MT, 개강 파티, 종강 파티, 딸기 파티 등의 친목 행사를 주최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.
- ③ 회장은 현역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되, 의무활동을 제외한 활동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한다.
- ④ 회장은 동연에 본회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와 분과회의에 참석한다.
- ⑤ 회장은 반기별 활동보고서를 동연에서 지시하는 대로 성실히 작성하며, 그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할 의무를 진다.

- ⑥ 회장은 동아리방 정기 재배치 서류를 동연에서 지시하는 대로 성실히 작성하며, 그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할 의무를 진다.
- ⑦ 회장은 본회의 모든 활동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진다.
- ⑧ 회장은 그 외 임원의 모든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, 관리 및 지원한다.
- ⑨ 회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.
- ⑩ 회장은 임기 종료 후 후임 회장의 임기 동안 본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한다.

제10조(부회장)

- ① 부회장은 본회의 부대표로서 총무 역할과 회장의 보조 역할을 한다.
- ②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 관리와 집행의 전권을 가진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에 회장의 본회 내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.
- ④ 부회장은 총무부를 총괄한다.
- ⑤ 부회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.

제11조(부서장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부서장이라 한다.
 - 1. 학술부장
 - 2. Math Letter 편집부장
 - 3. 홍보부장
 - 4. 경시부장
- ② 학술부장은 학술부를 총괄한다.
- ③ Math Letter 편집부장은 Math Letter 편집부를 총괄한다.
- ④ Math Letter 편집부장의 약어로는 ML부장을 사용한다.
- ⑤ 홍보부장은 홍보부를 총괄한다.
- ⑥ 경시부장은 경시부를 총괄한다.
- ⑦ 부서장의 임명은 제32조를 따른다.

제12조(신입대표회원)

- ① 신입대표회원은 본회 신입회원의 임시 대표 역할을 한다.
- ② 신입대표회원은 정기 모임 시 참석 인원에 따라 야식을 주문한다.
- ③ 신입대표회원은 임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, 신입회원을 대표하는 회원으로서 신입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칙에 따라 수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
- ④ 신입대표회원의 선출은 제33조를 따른다.
- ⑤ 신입대표회원의 활동명을 보쌈부장이라 한다.

제4장 부서

제13조(부서 배정)

- ① 본회의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.
 - 1. 총무부

- 2. 학술부
- 3. Math Letter 편집부
- 4. 홍보부
- 5. 경시부
- 6. 제19조에 의거한 임시부서
- ② 신입회원은 부서의 부원 모집에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부서 배정은 매 부서 배정 기간에 이루어진다.
- ④ 부서 배정 기간은 임원들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.
- ⑤ 부서 배정에 지원한 회원은 지원한 부서 내에서만 배정힐 수 있다.

제14조(총무부)

- ① 총무부는 본회의 현역회원으로부터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징수한다.
- ② 총무부는 동아리방을 포함한 본회의 소유물과 시설물의 관리를 담당한다.
- ③ 총무부는 회장과 함께 1년 예산안과 1년 결산을 작성한다.
- ④ 총무부는 Math Letter 편집부와 함께 Math Letter 발간에 관한 비용 및 수익을 관리한다.
- ⑤ 총무부원의 활동명을 동방요정이라 한다.

제15조(학술부)

- ① 학술부는 본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학술부는 정기 모임 시 세미나 연사를 관리하며, 정기 모임 세미나를 공지한다.
- ③ 학술부는 공개 세미나를 비롯한 학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세미나 연사를 관리한다.
- ④ 학술부는 본회 내에서 운영되는 과목톡방 및 스터디를 관리한다.
- ⑤ 학술부는 본회에서 외부 학생을 위해 진행하는 헬프데스크를 관리한다.

제16조(Math Letter 편집부)

- ① Math Letter 편집부는 구독, 포장, 배송 등 본회의 편집 및 발간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Math Letter 편집부는 Math Letter의 발간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.
- ③ Math Letter 편집부는 본회 회원 및 외부인으로부터 Math Letter 아티클을 수집하고, 투고를 독려한다.
- ④ Math Letter 편집부와 경시부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⑤ Math Letter 편집부의 약어로는 ML부를 사용한다.

제17조(홍보부)

- ① 홍보부는 본회의 홍보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홍보부는 신입회원 선발에 필요한 홍보를 담당한다.
- ③ 홍보부는 부스, 공개 세미나 등 대외 활동 홍보를 담당한다.
- ④ 홍보부는 동아리 레이스 진행을 담당한다.
- ⑤ 홍보부는 정기 모임, 행사 등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, 기록물을 보존한다.
- ⑥ 홍보부는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의 관리를 맡는다.

제18조(경시부)

- ① 경시부는 경시대회 문제풀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경시부는 본회의 간행물의 문제 및 풀이 자료 제작을 담당한다.

- ③ 경시부는 경시대회 관련 공지 및 참가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경시부와 Math Letter 편집부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19조(임시부서)

- ①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, 임시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.
 - 1. 임시부서의 부서장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여, 현역회원 5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제안
 - 2. 과반수의 임원의 임시부서 신설 동의
- ② 임시부서의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제안자
 - 2. 임시부서 부서장 예정자
 - 3. 필요한 권한
 - 4. 임시부서의 목적
 - 5. 임시부서의 명칭
- ③ 임시부서의 부서장의 권한은 제안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확정한다. 단, 임시부서의 부서장 예정자는 해당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④ 임시부서의 부서장의 권한은 담당 분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, 임원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임시부서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, 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임시부서를 폐지할 수 있다.

제5장 활동

제20조(활동)

- ① 본회의 활동은 교내활동, 대외활동, 편집활동, 친목활동으로 나뉜다.
- ② 교내활동은 정기 모임과 축제 부스 활동, 동아리 레이스를 포함한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③ 대외활동은 학술 교류회와 경시대회 및 각종 캠프 조교 활동을 포함한 KAIST 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④ 편집활동은 Math Letter 발간을 포함한 출판 활동을 말한다.
- ⑤ 친목활동은 홈커밍, 개강 파티, 종강 파티, MT를 포함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⑥ 대표활동은 본회의 활동 중 의무활동은 아니지만 대표성과 중요성을 가진 활동으로 어떠한 활동이 대표활동 인지는 본 회칙으로 규정한다. 회장은 회원들의 대표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야 하며, 회원들은 대표활동이 대표성과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.
- ⑦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본회의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- ⑧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임원진의 의결로 활동의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1조(정기 모임)

- ① 본회의 정기 모임은 시험 기간을 제외한 정규학기 중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루어진다.
- ② 정기 모임은 현역회원의 의무활동이다.
- ③ 회장은 정기 모임을 진행하며 정기 모임은 공지와 세미나, 이후 친목 시간으로 이루어진다.
- ④ 신입대표회원은 정기 모임 친목 시간의 야식 주문을 담당하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.

- ⑤ 학술부는 정기 모임 세미나를 관리한다.
- ⑥ 홍보부는 정기 모임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관련 글을 포스팅한다.

제22조(과목톡방)

- ① 과목톡방은 KAIST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관한 자유로운 질문 및 토의를 진행하는 학술활동으로, 해당 과목수강 여부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.
- ② 과목톡방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에 운영하며, 학술부장은 당해 학기 신입회원 선발 후 1주 이내에 참가신청을 받아 3인 이상의 신청을 받은 과목톡방을 개설한다.
- ③ 학술부장은 3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목톡방을 상시 추가개설할 수 있다.
- ④ 학술부장은 모든 과목톡방에 해당 학기 종강 시까지 잔류하여 과목톡방 활동을 감독한다.

제23조(스터디)

- ① 스터디는 KAIST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혹은 그 밖의 수학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동학습 및 토의를 진행하는 학술활동으로, 희망하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.
- ② 스터디는 원칙적으로 계절학기에 운영하며, 학술부장은 정규학기 종강 후 1주 이내에 참가신청을 받아 3인 이상의 신청을 받은 스터디를 개설한다.
- ③ 학술부장은 스터디 참가신청 기간에 본회 활동으로 인정되어 제9조의 "활동보고서"에 등재되는 스터디의 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학술부장은 3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터디를 상시 추가 개설할 수 있다.
- ⑤ 각 스터디 내에서는 일정, 장소, 출결, 진도 등을 관리할 팀장을 선출한다. 단, 학술부장은 팀장을 역임할 수 없다.
- ⑥ 학술부장은 모든 스터디 채팅방에 종료 시까지 잔류하여 각 스터디의 팀장과 함께 스터디 활동을 감독한다.
- ⑦ 제3항의 "본회 활동으로 인정되는" 스터디의 팀장은 스터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스터디에 우수·성실하게 참여한 회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원금을 학술부에 신청할 수 있다. 가능한 지원 금액의 최댓값은 스터디 참가신청이 완료된 후 부회장이 참가자 수와 본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⑧ 학술부장은 제7항의 "지원금 신청"을 심의한다. 단, 학술부장이 제7항의 "상품"의 지급 대상자인 경우 그 밖의 임원 1인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"신청"은 반려한다.
 - 1. 상품의 지급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상품 지급 대상자가 해당 스터디에 우수 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
 - 3. 상품 중 하나라도 가격이 ₩20,000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
 - 4. 상품 지급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명백한 경우
- ⑨ 부회장은 제8항의 "심의"에서 승인된 지원금을 본회의 재정에서 지급한다.

제24조(축제 부스 활동)

- ① 본회는 태울석림제(석림태울제) 기간 동안 부스를 운영한다.
- ② 축제 부스 활동은 모든 신입회원의 의무활동이다. 단, 과반수의 임원진의 의결을 통해 의무화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축제 부스는 축제 부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.
- ④ 축제 부스 운영위원회는 운영부, 대외부, 재정부, 홍보부 4개의 부서로 구성한다.
- ⑤ 운영부는 회장이 임시로 임명한 운영부장에 의해 운영되며 운영인원들을 교육한다.
- ⑥ 대외부와 재정부는 부회장에 의해 운영되며 대외부는 행사 준비 및 물품 유통을 담당하고, 재정부는 행사 당일 재정 운영을 담당한다.
- ⑦ 홍보부는 홍보부장에 의해 운영되며 부스에 대한 모든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.

- ⑧ 회장은 시설과 장소를 마련하고, 부스를 총 감독한다.
- ⑨ 부스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.
- ⑩ 회장은 행사 당일 모든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, 부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 책임을 진다.

제25조(동아리 레이스)

- ① 홍보부장은 회원들 간의 친목 활동 증진 및 신입생의 동아리 적응을 위하여 동아리 레이스를 운영한다.
- ② 동아리 레이스는 매 정규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신입회원의 의무활동이다.
- ③ 동아리 레이스는 해당 학기 현역회원으로 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목표를 달성한 그룹에게 점수를 주어 학기 종료 시점에 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④ 그룹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홍보부장이 정한다.

제26조(학술 교류회)

- ① 본회는 POSTECH 수학 동아리 MARCUS, UNIST 수학물리 동아리 EoE와 교류관계에 있다.
- ② 위 세 동아리는 1년에 두 번 각각 여름과 겨울에 돌아가면서 학술 교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학술 교류회를 위해 학술부장은 회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한다.
- ④ 학술 교류회는 본회의 대표활동이다.
- ⑤ 회장은 교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더 나은 교류회가 되도록 꾸준히 다른 동아리의 회장들과 교류한다.

제27조(Math Letter)

- ① Math Letter는 본회에서 1988년도부터 발간해왔던 수학에 대한 아티클, 국내외 수학올림피아드, 독자들의 문제 풀이, 영재 교육 소식 등을 담고 있는 간행물이다.
- ② Math Letter는 격월로 홀수 달마다 정기 발간을 한다.
- ③ Math Letter 발간은 본회의 대표활동이다.
- ④ Math Letter 편집부장은 Math Letter에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.
- ⑤ Math Letter 발간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Math Letter 편집부장이 관리하며, Math Letter 발간 비용과 아티클을 투고한 사람에게 적절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다. 이후 남는 수익은 모두 본회의 재정으로 환원한다.
- ⑥ Math Letter의 다른 표기로 MATH LETTER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약어로는 ML을 사용한다.

제28조(친목활동)

- ① 홈커밍은 5년마다 실시되는 본회의 친목활동으로 본회의 회원이었던 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.
- ② 홈커밍 실시 당시 활동기간이 정규학기 기준 4학기 이하인 현역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개강 파티와 종강 파티는 현역회원의 의무활동이다.
- ④ 개강 파티는 매 정규학기 신입회원이 들어온 첫 정기 모임 일자에 이루어진다.
- ⑤ 종강 파티는 매 정규학기 마지막 정기 모임 일자에 이루어진다.
- ⑥ 회장은 임원 및 일부 회원들과 함께 매 학기 MT를 기획한다.
- ⑦ MT는 본회의 대표활동이다.

제6장 운영

제29조(재정)

- ①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한다.
- ②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들이 납부한 동아리 활동 비용과 동연의 지원금, 편집활동 수익, 축제 부스 수익, 후 원금을 포함한다.
- ③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징수할 의무를 가진다.
- ④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위하여 동연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진다.
- ⑤ Math Letter 편집부장은 부회장의 협조를 받아 Math Letter 발간 비용과 수익을 관리한다.

제30조(수고비)

- ① 본회의 모든 임원과 신입대표회원은 임기 종료 시 재정 상태와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.
- ② 수고비의 액수는 차기 임원진이 산정한다. 단, 연임한 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임원은 산정에 참가할 수 없다.
- ③ 임원의 수고비의 가능한 최댓값은 ₩150,000으로, 신입대표회원의 수고비의 가능한 최댓값은 ₩50,000으로 한다.
- ④ 수고비의 산정은 현, 차기 임원진이 아닌 회원 중 감사 인원 지원자 전원이 감사한다.

제31조(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)

-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모든 현역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.
- ③ 1학기 이상 활동한 현역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.
-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매해 가을학기 종강 파티가 없는 마지막 정기 모임에 진행하며, 해당 정기 모임에 참석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 지원자를 전원 후보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. 단, 회장의 선거를 우선 실시하며, 회장 당선자는 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.
- ⑤ 현역회원 1/3 이상이 투표한 경우,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자로 확정된다. 단, 단일후보일 경우, 찬성 투표가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의 과반일 시 당선으로 인정한다.
- ⑥ 제5항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존재하나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,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만을 입후보하여 재선거를 진행한다.
- ⑦ 현역회원 1/3 미만이 투표한 경우,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 2/3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자로 확정된다. 단, 단일후보일 경우, 찬성 투표가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의 2/3 이상일 시 당선으로 인정한다.
- ⑧ 제7항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존재하나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,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만을 입후 보하여 재선거를 진행한다.
- ⑨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, 당선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4항의 후보 지원부터 반복한다.

제32조(임원의 임명)

- ① 부서장의 임명은 본 조항을 따른다.
- ② 부서장은 제31조의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이 완료된 직후, 해당 직책의 현임 임원과 새롭게 선출된 회장이 협의를 통해 차기 임원을 결정하여 즉시 임명한다. 단,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명할 수 없다.

제33조(신입대표회원의 선거)

- ① 신입대표회원의 선거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모든 신입회원은 신입대표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- ③ 신입대표회원의 정원은 선거 진행 이전에 해당 학기의 회장이 3인 이하로 정한다.
- ④ 신입대표회원의 선출은 정규학기 신입회원 선발 후 두 번째 정기 모임에서 이루어지며, 해당 정기 모임 참석

회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신입회원 중 지원자를 전원 후보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.

- ⑤ 후보자의 수가 신입대표회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권 없는 선호 투표를 진행하여,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당선된다. 단, 동표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남은 신입대표회원 정원에 대한 선호 투표를 재차 진행한다.
- ⑥ 후보자의 수가 신입대표회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, 후보자 전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.

제34조(총회)

- ① 총회는 본회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.
-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회장이 공석이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회장을 임시 의장으로 한다.
- ③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
 - 2. 임원의 탄핵안의 심의 및 의결
 - 3. 회원의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
 - 4. 회장이 공석인 경우 회장의 선출
 - 5. 부회장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의 선출
 - 6.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
-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발의된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.
 - 1. 본 회칙 제37조에 의해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
 - 2. 본 회칙 제35조에 의해 임원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
 - 3. 본 회칙 제36조에 의해 회원의 제명안이 발의된 경우
 - 4. 본 회칙 제35조에 의해 회장 또는 부회장의 보궐선거가 시행될 경우
 - 5.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 - 6. 현역회원 1/5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
- ⑤ 총회는 가까운 정기 모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안건에 대한 공고 및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차기의 정기 모임으로 미룰 수 있다.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정기 모임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, 의장은 긴급 총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. 단, 긴급 총회의 소집은 24시간 이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.
- ⑦ 총회는 재적 현역회원 1/3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.
- ⑧ 본 회칙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, 총회의 안건은 현역회원 1/3 이상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하여, 재적 현역회원 1/3 이상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5조(임원의 탄핵과 보궐 선출)

-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.
 - 1.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과반수의 요구
 - 2. 현역회원 1/4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
-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회장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.
 - 1.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2/3 이상의 요구

- 2. 현역회원 1/3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
- ③ 탄핵 소추된 임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,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현역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한다. 이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탄핵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.
- ④ 탄핵된 임원은 이후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수고비를 받을 수 없다.
- ⑤ 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닌 임원이 공석인 경우 차기 임원을 회장이 임명한다.
- ⑥ 부회장이 공석인 경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부회장을 선출한다.
- ⑦ 회장이 공석이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- ⑧ 회장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.
- ⑨ 회장 및 부회장의 보궐선거 시 선거 방식은 제34조의 방식을 준용한다. 단, 부회장이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부회장의 직을 상실하며, 부회장을 공석으로 한다.

제36조(제명)

- ①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현역회원 1/5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제명안을 상정할 수 있다.
 - 1. 본회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
 - 2.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
 - 3.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
- ② 제명안이 상정된 경우 회장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, 승인될 경우 발의되어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. 단, 과반수의 현역회원이 제명안에 참여하였을 경우 회장의 승인이 불필요하다.
- ③ 제명안의 의결은 재적 현역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제명안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의 형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제37조(회칙 개정)

-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 - 1. 회장의 발의
 - 2.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과반수의 발의
 - 3. 현역회원 1/7 이상의 연서를 통한 발의
- ② 제1항제1호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 임원진은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발의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③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되어야 한다.
- ④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 기간이 지난 이후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.
- ⑤ 회칙 개정안은 찬반 투표를 통하여 재적 현역회원 과반수의 재석과, 재석 현역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, 회장은 이를 1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.
- ⑥ 부칙에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, 확정된 회칙은 공고 후 3일 후에 발효된다.
- ⑦ 임원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의 변경, 수고비 상한 인상을 위한 회칙 개정은 해당 회칙 개정 제안 당시의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